

한-EU FTA/한-인도 CEPA 승용자동차 품목분류 기준

품목명	분 류 기 준
세단형의 것	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승용자동차 ○차체 : 상자형*으로 엔진룸과 객실, 트렁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(3박스형) ○지붕 : 고정되고 견고하며 일부가 개방되어도 좋다 ○좌석 : 적어도 2열로 합계 4석 이상이다 ○문짝 : 측면에 2매 또는 4매이다 ○창 : 측면에 4매이나 4매 이하의 경우도 있다 * 상자형이란 개방형·개방가능형과 대비되는 말로 외부와 단절(폐쇄)된 형태를 말함
쥘형의 것	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승용자동차 ○차체 : 옆에서 볼 때 엔진룸과 객실(화물공간과 미구분)의 2구역인 본네트(bonnet)형이다 ○문짝 : 측면에 2매 내지 4매이다 ○특징 : 최저지상고*가 세단형보다 높아 오프로드(off-road) 주행에 적합하다 * 최저지상고(最低地上高)란 차체의 가장 낮은 부분과 노면사이의 거리를 말함
케리올 트럭형	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승용자동차 ○차체 : 사람과 화물을 동시에 탑승/적재시킬 수 있는, 트럭과 유사한 형상이나 트럭과 같은 프레임의 구조가 아닌 승용차 구조의 차체이다 ○좌석 : 1열(2석)이다 ○특징 : 사람이 탑승하는 부분과 완전히 구분된 화물적재 공간이 존재하며 이는 개방되어 있어도 좋다 ※ 화물자동차와의 구분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름

품목명	분 류 기 준
세단 데리버리형	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승용자동차 ○차체 : 사람과 화물을 동시에 탑승/적재시킬 수 있는 차량으로 옆에서 볼 때 엔진룸과 객실·화물 공간의 2구역형이다 ○특징 : 사람이 탑승하는 부분과 완전히 구분된 화물적재 공간이 존재하며 뒷쪽 창문은 없거나 견고한 판넬로 되어 있다 ※ 화물자동차와의 구분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름
이와 유사한 형	사람과 화물을 동시에 탑승/적재시킬 수 있는 차량으로 사람이 탑승하는 부분과 완전히 구분된 화물적재공간이 존재하는 형태의 승용자동차 ※ 화물자동차와의 구분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름
스테이션 왜곤	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승용자동차 ○차체 : 세단의 연장형(상자형)으로 뒷쪽의 모양은 차 실내용적이 크게 설계되고 있다 ○지붕 : 고정되고 견고하며 일부가 개방되어도 좋다 ○좌석 : 최대 9인(운전자 포함)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갖추고 있다 ○문짝 : 측면에 2매 또는 4매이며 후면에 1매이다 ○창 : 측면에 4매 이상이다 ○특징 : 내부는 구조변경 없이 사람과 화물의 두가지 수송이 가능하다 ※ 화물자동차와의 구분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름
구급차	환자 긴급수송의 설비를 갖추고 있는 특별용도의 승용자동차(=엠블런스)
홈 카	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특히 주거용 설비(취침·요리·화장실 등)를 갖춘 승용자동차(=모타홈)
기 타	위의 어느 형에도 분류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